1. 개정이유

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,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신설됨에 따른 조직명칭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고시(안 별지 [별표1] 개정)

나.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최소 지원규모 고시(안 별지 [별표2] 개정)

- ㈜와이티엔디엠비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, 최소 지원규모는 부칙에 따라 별도로 산정
-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조정

다.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신설됨에 따라, 조직명칭 변경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- '방송통신위원회'→'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'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제2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별첨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 호

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각각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각각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방송통신위원회는”을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”으로, “방송통신위원회에”를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, “2021년”을 “2024년”으로 한다.

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[별표1]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[별표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 지원대상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)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6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되, 2031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[별지 1]과 [별지 2]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	제8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.
② 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.	② ---------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.
제9조(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[별표 1]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[별표 2]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	제9조(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.
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	② ----------

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----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. ---------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.
제10조(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·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매년 고시한다.	제10조(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-------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---------- 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	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 ---------- ----------

취소 또는 업무정지, 결합판매 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[별표 1] 및 [별표 2]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.	----------.
제11조(규제의 재검토) 방송통신위원회는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1조(규제의 재검토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.
제12조(재검토기한) 방송통신위원회는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2조(재검토기한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----------2024년----------.

(별지)

[별표1]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

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)	12.0792%
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(㈜에스비에스엠앤씨)	8.9954%

[별표2]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

1.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한국방송공사 및 ㈜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)

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5년 평균 비율(%)	조정률(%)	결합판매 지원규모(%)
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	부산문화방송㈜	0.6172%	99.5445%	0.6144%
	대구문화방송㈜	0.4551%		0.4530%
	광주문화방송㈜	0.3771%		0.3754%
	대전문화방송㈜	0.4140%		0.4121%
	전주문화방송㈜	0.3787%		0.3770%
	㈜엠비씨경남	0.6364%		0.6335%
	제주문화방송㈜	0.4502%		0.4481%
	울산문화방송㈜	0.3694%		0.3677%
	춘천문화방송㈜	0.3988%		0.3970%
	㈜엠비씨강원영동	0.7246%		0.7213%
	포항문화방송㈜	0.3249%		0.3234%
	여수문화방송㈜	0.2975%		0.2961%
	㈜엠비씨충북	0.8107%		0.8070%
	원주문화방송㈜	0.3374%		0.3359%
	안동문화방송㈜	0.3060%		0.3046%
	목포문화방송㈜	0.2949%		0.2936%
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	(재)CBS	1.7374%		1.7295%
	(재)불교방송	0.4946%		0.4923%
	(재)가톨릭평화방송	0.4305%		0.4285%
	(재)극동방송	0.1980%		0.1971%
	(재)원음방송	0.2268%		0.2258%
	(재)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	0.0515%		0.0513%
	(재)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	0.0068%		0.0068%
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0.0126%		0.0125%
	한국교육방송공사	1.4056%		1.3992%
	㈜경인방송	0.1580%		0.1573%
	㈜YTN 라디오	0.1645%		0.1638%
	㈜와이티엔디엠비			0.0550%
합계		12.0792%		12.0792%

2. ㈜에스비에스엠앤씨(㈜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)

구분	지원대상 사업자	결합판매 지원규모(%)
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	㈜케이엔엔	1.1293%
	㈜티비씨	0.8793%
	㈜광주방송	0.7362%
	㈜대전방송	0.6139%
	㈜전주방송	0.4077%
	㈜울산방송	0.4095%
	㈜청주방송	0.4220%
	㈜지원방송	0.5557%
	㈜제주방송	0.3997%
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	오비에스경인티브이㈜	3.4421%
합계		8.9954%